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

[시행 2019. 7. 1.] [대통령령 제29849호, 2019. 6. 11., 제정]

해양수산부 (해사안전정책과) 044 - 200 - 5820
해양수산부 (해사산업기술과) 044 - 200 - 5838, 5833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등기)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, 지사, 사업소,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
제3조(지사 등의 설치등기) ①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·사업소·연구기관·교육기관 등(이하 "지사등"이라 한다)을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, 그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기존에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

제4조(이전등기)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,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등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, 지사등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전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

제5조(변경등기)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.

제6조(등기신청 서류)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: 해당 정관
2.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: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
3.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: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4.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
제7조(자문기구)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,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 사항
2.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·집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정부출연금의 지급)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9조(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)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조금)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자금의 차입 등)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(借入)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(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·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)
2.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
3.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
4.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
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29849호,2019. 6. 11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 중 "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

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"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3.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4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"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⑧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선박안전기술공단"을 각각 "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제1항 중 "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